

## 미국의 재정소요검검과 세입세출균형준칙에 관한 법제 분석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미 “미국의 재정소요점검과  
세입세출균형준칙에 관한  
법제 분석”

최 유(부연구위원)

# 법제분석 요약

## 개요▶▶▶

- 미국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자 관리제도를 법률화함
  - 재정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재정소요점검과 세입세출균형준칙임
  - 두 제도 모두 기준선제도를 근거로 하여 의회의 장기적인 재정전망과 신규법률에서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는 재정영향을 비교함
- 재정소요점검은 의회가 결의한 예산총액과 상임위원회별 할당액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임
  - 주로 재량지출에 관한 관리장치로 기능
  - 상임위원회별 할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 진행상 이의제기를 통하여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음
  - 미국의 재정소요점검 가이드라인은 재정평가에 관련된 대통령실 OMB와 의회의 CBO 등 전문기관의 합의사항을 반영함
  - 조정법안에 의한 지출규모측정, 새로운 지출원인행위에 의한 회계연도의 결정, 지출원인행위 등이 취소된 경우, 자산매각의 경우에 처리방법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됨
- 세입세출균형준칙은 2010년 법으로 부활
  - 법률은 준칙 위반시 대통령이 강제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조정대상에 사회보장법 등 다수의 예외를 둠
- 미국의 재정준칙은 강제조정의 실현하기보다는 상원과 하원의 규칙으로서 이의제기를 통한 정치적 협상과 합의를 시도함

# CONTENTS

I. 서론	4
1.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 제도화의 의의	4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5
II. 미국 재정관리제도	7
1. 미국 예산절차 개관	7
2. 미국 재정준칙제도의 개요	9
III. 재정소요점검	11
1. 의의	12
2. 절차	12
3. 가이드라인	13
4. 시사점	23
IV. 시사점	24
1. 의의	24
2. 주요내용	27
3. 시사점	48
V. 결론	49
VI. 참고문헌	51

# 01 / 서론

## 01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 제도화의 의의

- 우리 헌법은 재정건전성(fiscal consolidation)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정부의 재정활동이 전체 경제질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강조되는 현대국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차입이나 국가채무의 누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 이에 재정준칙(fiscal rule) 또는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헌법화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음
  - 독일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는 재정수지 준칙, 스위스는 세출측면을 규제하는 지출준칙을 헌법화
  - 우리의 경우 재정건전성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됨
  -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재건전성과 관련된 내용이 국가재정법 여러 곳에 산재함
  -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의 재정운용계획은 제1항에서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는 예산원칙으로서 제1호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장 표제가 재정건전화임
- 제86조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상의 재정건전성은 주로 국가채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재정의 유지가능성 내지 지속가능성을 의미함
-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설정이 갖는 의의
  - 재정건전성은 불확정 개념이고, 건전재정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힘들
  - 다만, 정부는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관리해야 함
  - 즉 정부는 매년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적자(budget deficit)를 줄여서 국가 채무(debt)를 관리함
  -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원칙을 재정준칙(fiscal discipline)이라 함
  - 현재 우리의 국가재정법에는 명시적인 재정준칙은 없는 상태

## 0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 증가
  - 경기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2015년에도 확장적 재정운용을 계획
  - 복지제도를 비롯하여 일자리·창조경제 등에 필요한 예산 증가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낮은 경제성장률과 경기부진으로 세입이 세출에 못미침
  - 이로 인해서 누적된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요청됨
  - 한반도 통일과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의 잠재적 재정적 압박요인도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증가시킴



- 1970년대 이후 미국 재정운영은 재정건전성관리가 필요한 상황을 초래함
  - 민주당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과 경기불황에 따라 재정적자가 시작
  - 1980년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는 경기불황에 직면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정책과 군사비 증액을 동시에 시도하여 미국 재정적자폭이 크게 증가
  - 1993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호황과 정부부문의 개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복지지출을 늘어남
  - 2000년 공화당 조지 부시행정부에서 다시 감세정책과 9.11 테러이후 군사비 증가로 재정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됨
- 헌법에 재정준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재정준칙을 법률로 제도화한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
  - 미국의회예산처의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은 우리 국회법 제79조의 2의 비용추계제도와 유사하나 전체지출예산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전체예산관리를 위한 준칙으로 기능하는 재정관리준칙
  - 재원동시제출제도인 세입세출균형준칙(Pay-as-you-go)은 의회 스스로 새로운 의무지출이나 재량지출이 포함된 지출법률안을 제안하거나 신규 세입법안을 제안할 때에는 재정수지의 변동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법규정
- 재정소요점검과 세입세출균형준칙은 미국의 대표적인 재정관리준칙이며 이러한 재정준칙을 통해서 스스로 재정적자를 줄여나가는 자기교정적 예산과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슈페이퍼에서 두 제도의 법률내용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번역과 개괄적인 분석을 하여 향후 이 두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시 입법자료를 제공함<sup>1)</sup>

1) 이 보고서의 재정소요점검가이드라인과 세입세출균형지출법은 COMPILATION OF LAWS AND RULES RELATING TO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 AS AMENDED THROUGH AUGUST 3, 2012 -, COMMITTEE ON THE BUDGET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12을 기준으로 함



# 02

## 미국 재정관리제도



### 01 미국 예산절차 개관

- 미국 의회의 예산절차
  - 미국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이하 CBO)는 매년 1월 “예산 및 경제전망(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여 향후 경제전망과 현행 예산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한 예산 전망인 기준선(Baseline) 전망을 예산위원회에 보고
  - 기준선이란 정부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과 정책이 변동이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 예측되는 지출수준을 의미
  - 대통령은 의회에 예산안을 2월 첫째 월요일에 제출.
  - 의회는 ‘예산 총량’을 의회의 의결인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으로 6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4월 15일에 의결
  - 예산결의안은 예산총량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의 예산승인에 해당
  - 그런데 ‘예산결의안’은 예산총액과 함께 명시된 분야별 자원배분과 그에 따른 위원회별 할당을 하고 있음
  - 예산결의안은 12개의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재정수반법안과 세출법안 그리고 재정수반법안들이 지켜야 할 ‘세출총액’과 ‘예산할당액’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여
  - ‘예산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예산심사과정과 상임위원회별 개별적 법률심사에서 예산준칙과 재정관리제도가 작동





- 미국의 재정영향평가제도인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과 재원동시제출제도인 세입세출균형준칙(Pay-as-you-go)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재정관리 기준과 제도
- 재정소요점검제도와 세입세출균형준칙 모두 1월에 CBO가 발표한 기준선 전망(baseline)을 기준으로 함
- 예산결의안이 작성된 이후에는 새로운 예산연도에 새롭게 제출되는 법률안에 대한 평가가 수반됨
- 예산결의안에 명시된 분야별 자원배분과 그에 따른 위원회별 예산할당금액을 재정수반법안이나 세출법안을 심사할 때 원칙적으로 지켜야 함
- 미국의 예산관리제도는 예산총액을 정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법률안의 지출과 수입결정을 통제하는 방식임

● 미국의회 예산절차의 시간순서<sup>2)</sup>

• 매년 1월 첫 번째 월요일	- 대통령예산안이 의회 제출
• 2월 15일	- CBO는 예산위원회에 경제전망을 제출
• 대통령 예산제출 이후 6주 경과	- 상하원 예산위원회에 대통령예산안과 기준선을 비교한 CBO의 보고서 제출
• 4월 1일	- 상원의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안 채택
• 4월 15일	- 의회의 예산결의안 채택
• 6월 10일	- 하원세출위원회의 지난해 세출법안 검토보고
• 6월 30일	- 하원에서 세출법(regular appropriations bills)과 조정법률(reconciliation legislation)의 입법완료
• 7월 15일	- 대통령의 중기보고서(mid-session review)를 의회에 제출
• 10월 1일	- 회계연도 시작

2) The Federal Budget Process, TheCapito.Net, 2012, 1-16면.





## 02 미국 재정준칙제도의 개요

- 기준선전망
  - 기존 법률의 재정지출에 기초하여 예산계정, 지출(직접지출과 재량지출), 수입, 재정수지의 당해 연도(current year)와 후속연도에 대한 전망
  - 미국 의회예산과정에서 재정소요점검과 세입세출균형준칙 등의 재정준칙에 비교기준(benchmark)이 되는 것이 기준선전망임
- 재정소요점검
  - 상임위원회(수권위원회)나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재정수반법안이나 세출법안이 예산결의안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의 심사종료나 수정을 요구(의사진행상이의제기, point of order) 할 수 있음.
  - 재정소요점검은 법안비용추계를 통해서 새로운 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될 때 예산결의안에서 미리 정해진 자원배분 한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임
- 세입세출균형준칙
  - 새법률안이 직접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이와 함께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입증가나 다른 직접지출의 감소 등의 세입확보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
  - 2010년 세입세출균형준칙법이 다시 제정되었으며, 상원과 하원의 의회규칙으로도 규정됨



- 이의 제기 절차

- 예산결의안이 갖는 법적 효력을 강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결의절차 이후에 세입 또는 세출법안을 심의하여야 함
- 계류중의 세입 또는 세출법안이 예산결의안의 할당량이나 예산준칙을 어겼을 경우에 의사진행상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법안의 심의를 통제함
- 예산집행법 302조(BEA)는 상하원이 소위원회에 할당된 세출액을 초과하는 어떠한 조치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의제기절차’를 통해서 법안심의를 중단시킬 수 있음
- 이의제기를 하면 의장의 결정에 의하여 법안의 심사가 종료되거나, 예산결의안과 그에 따라 할당된 한도에 맞추어 수정안을 내거나,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의제기절차를 면제시킬 수 있음<sup>3)</sup>
- 하원은 단순 과반수의 표결로 의사진행상 이의제기를 무효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상원에서의 의사진행 이의제기는 가중적 과반수인 의원정수의 5분의 3인 60표를 얻어야 무효화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차이는 하원은 다수당의 영향을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상원은 본회의에서 수정을 많이 하도록 덜 당파적인 구조로 기능하도록 권한이 배분되어 있다는 특징에 기인함<sup>4)</sup>
- 이러한 절차는 실제로 작동되기 보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둠으로써 양 정당의 협력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짐<sup>5)</sup>

3)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방안 연구, 예산정책보고서 제10호, 국회예산정책처, 2010, 38면.

4) 알렌 쉬크, 현성수·국경복·김승기·정문종·이양성의 번역, 미국연방예산론, 한올아카데미, 2005, 201면.

5) 알렌 쉬크, 위의 책, 203면.



# 03 / 재정소요점검

## 01 의의

-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는 새로운 입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재정소요점검제도라는 명칭이외에도 수입지출예산규모점검<sup>6)</sup>, 지출규모점검<sup>7)</sup>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함
  - CBO는 예산점검(Scoring)과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sup>8)</sup>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예산점검(Scoring)은 현행법률과 새로 통과된 법률이 예산에 미치는 효과(Scorekeeping)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채무를 관리
  - 기준선을 기준으로 심의되고 있는 법률안이 수입과 지출에 주는 영향을 주는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 재정소요점검제도임
  - CBO와 양원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이하 JCT)는 예산안과 의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향후 5년 동안의 지출과 수입에 변화를 주는 정도를 추계함
  -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법률안에는 법안비용추계서가 포함되는데 비해서, 세출법안은 법안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니므로 세출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
  - 따라서 재정소요점검은 주로 세출법안 심사에 적용됨

6) 정문중,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제15호, 국회예산정책처, 2007. 6.

7) 알렌슈크, 앞의 책, 93면.

8) 알렌슈크, 위의 책, 197면.



## 02 절차

### ● 개관

- CBO는 재정소요점검표를 작성하여 예산위원회에 제공함
- 예산위원회는 CBO가 제공한 재정소요점검표에 근거하여 미국의 예산과정을 통제함
- 재정소요점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합쳐 놓은 것임
- 만약 상임위원회에 재정수반법률안이나 세출위원회의 세출법안이 예산결의안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할당액을 위반할 경우에는 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이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상 이의제기를 하여 법안 심사를 중지시키거나 수정하도록 함

### ● 비용추계

- CBO는 양원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함
- 양원의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사하는 법안은 CBO의 비용추계를 거쳐야 하는데, 특히 한국과 다른 것은 수정되어 통과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도 이루어짐
- 즉, 개별법안의 재정소요만이 아니라 위원회별 또는 전체 신규법안의 재정소요액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비용을 추계함
- 한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대안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 ● 재정소요점검보고서

- 재정소요점검보고서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 신규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예산결의안의 총량금액과 의회의 입법에 따른 기존의 재정수입과 지출 그리고 새로운 회기에 입법된 법률안에 의한 재정수입과 지출을 비교함





### 03 가이드라인

- 재정소요점검 가이드라인은 미국 상원과 하원의 예산위원회와 CBO, OMB가 재정소요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재량지출, 직접지출, 수입금, 상각 등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 목적임

이 예산재정소요점검가이드라인(budget scorekeeping guidelines)은 상원과 하원의 예산위원회,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예산 관리국(Management and Budget)(재정소요점검관리자(scorekeepers))에서 개정된 1974년 의회예산법(CBA) 및 개정된 GRH, 개정된 Pay-go법(Statutory Pay-go), 개정된 예산 통제법 2011(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부합하도록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재정소요점검자가 확립된 재정소요점검협약(established scorekeeping conventions)과 재량지출, 직접지출, 수입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결산에 대한 입법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재정소요점검 관리자에 의하여 매년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재정소요점검 관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 새로운 계정이나 활동은 재정소요점검 관리자들 간의 협의 후 분류된다. 계정과 활동은 모든 재정소요점검 관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재분류되지 않는다.

- 재정소요점검은 정부지출을 어떻게 분류할지가 중요함
  - 분류기준의 재분류 등 이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소요관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1. 세출의 분류(Classifications of appropriations)**  
 세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수립되는 세출목록은 지침(컨퍼런스 보고서 1014페이지부터 1053페이지)에 따른다. 이 세출목록은 세출을 지원받는 보조금, 기타 정부지출금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정지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재량지출을 카테고리별로 규정한다.

**2. 이월지출(Outlays prior)**  
 전년도 세출의 지출은,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의 재량/법정분류(discretionary mandatory classification)에 부합하도록 분류된다.



- 직접지출 프로그램의 분류

### 3. 직접 지출 프로그램

재정지원 및 기타 법정 프로그램(상쇄 수입(offsetting receipts) 포함)은, 의회 활동(Congressional action)이 수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GRH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수준에 따라 재정소요가 추계된다.

수권법 또는 세출법들(appropriations laws)에서 규정하는 기타 법정 지출 법(mandatory spending law)은 정부지출금 위원회 302(b)의 상·하원 배분에 따라 재정소요를 추계할 것이다. CBA 스코어링의 목적을 위하여, 세출금법안(appropriation bill)과 조정 법안(reconciliation bill)에 포함되는 직접 지출 수익은 세출금법안(appropriation bill)이 아닌 조정 법안(reconciliation bill)에 따라 재정수요가 추계될 것이다. GRH 제251조 또는 제252조에 의거하여 스코어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규정들은 제정된 입법으로 최초로 기록될 것이다.

- 의무항목과 재량항목은 쉽게 전환될 수 없음

- 의무지출항목에서 재량항목으로 예산계정을 변경하는 것은 수익지출을 늘어나게 하는 것으로 봄

### 4. 의무지출항목에서 재량지출항목으로 예산 권한을 변경(Transfer of budget authority from a mandatory account to a discretionary account)

예산권한을 재량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재량 예산계정과 수익계정(gaining account)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계될 것이다. 지출계정(losing account)은 계정이 재정지원이나 법정지원 계정인 경우, 상환 감축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계정 중에서 양도가 허용되는 계정도 있으며, 이는 정보, 역사, 행정부의 지시사항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됨

#### 5. 허용되는 권한 양도

허용되는 양도는 이를 반대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은 가능한 최적의 정보, 근본적인 역사적 경험과 적용가능한 행정부의 지시사항 또는 의회의 의사에 근거하여 추계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특정 양도(specific transfers)(수익계정과 지출 계정의 양도로 인한 비용은 규명될 수 있다)와 일반 양도 권한(general transfer authority) 모두에 적용된다.

- 예산권한이 만료된 경우와 사전세출할당은 새로운 회계연도기준으로 추계되며, 예산결의안에서 할당되었으나 지출하지 않은 발생한 잔액은 지출 감소로 추계함

#### 6. 세출재할당(Reappropriations)

예산권한 기간만료 잔액(expiring balances of budget authority)에 대한 세출재할당 잔액이 새로이 사용되는 새로운 회기년도의 예산계정으로 추계한다.

#### 7. 사전세출할당(Advance appropriations)

예산권한에 따른 사전세출할당은, 정부세출법이 입법되지 않았을 때(not when the appropriations are enacted)는 자금이 새롭게 회기년도의 새로운 지출원인행위(obligation)로 활용 가능한(newly available for obligation) 회기년도의 예산권한으로 추계한다.





-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예산권한과 자금이 폐지된 연도의 지출감소로 추계함

#### 8. 집행하지 않은 잔액의 폐지 및 양도

집행하지 않은 잔액(unobligated balances)은 현재 예산권한과 자금이 폐지된(the money is rescinded) 연도의 지출 감소로 추계한다. 집행하지 않은 잔액의 양도는 현재의 예산권한과 자금이 양도되는 계정의 지출로 추계되고 이러한 자금이 양도되는 계정에서의 예산권한과 지출의 증가로 추계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전은 자원 계정(source accounts)에서의 예산권한의 순 손실 액(net negative budget authority amounts)을 초래할 것이다. GRF 제257조의 목적을 위하여, 예산권한의 이러한 액수가 0으로 수렴하도록 추계한다. 이전이나 수신을 통해서 추계되는 지출은 각각의 계정에 적합한 지출 패턴에 따라 추계한다.

- 지출원인행위의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은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시기를 특정할 수 있으며, 미래 회계연도까지 의무지출행위로 유용되지 못하면 사전 세출할당으로 추계함

#### 9. 지출원인행위의 지연(Delay of obligations)

세출법은 자금이 지출원인행위로 유용할 수 있는 시기를 특정한다. 새로운 예산권한이 기록되는 해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날이다.

이러한 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은 제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만약 새로운 세출이 재정권한의 한 부분으로 미래 회기년도까지 의무지출행위로 유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예산권한의 사전세출할당으로 여겨질 것이다.

지출원인행위로 유용될 수 있는 해부터 예산원인행위로 유용될 수 없는 해까지 법이 현재의 예산권한(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잔액)을 연기한다면, 이러한 법은 현재 연도에 폐지된 것으로 추계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권한으로 연장된 연도의 세출재할당으로 추계될 것이다.





- 지출원인행위가 후속입법에 따라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권한과 지출로 추계함

#### 10. 후속입법(Contingent legislation)

지출원인행위를 할 권한이 추가정부세출을 위한 입법에 의존하는 경우, 새로운 예산권한과 지출은 추가세출할당(subsequent appropriation)으로 추가한다. 재량적 지출의 추가 권한의 입법에 의존하는 경우, 새로운 예산 권한과 지출은 후속입법에 따라 추계해야 한다.

재량적 지출이 행정부처(Executive Branch) 또는 기타 일반적으로 추계되는 기타 사건(event)에 의한 행위의 수행에 의존하는 경우에, 새로운 예산권한은 세출로 추계될 것이고, 지출은 조건부사항들(the contingency)이 발생할 때 최적의 정보(best information)에 기반하여 추계될 것이다.

의회의 통제 하에 있고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조건부 사업은 추계대상인 사건이 아니다.

- 구입 내지, 리스구입, 자본리스, 운용리스 등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계됨

11. 법이 구매(purchase), 리스-구입(lease-purchase) 또는 자산의 리스(lease of an asset)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에이전시에 부여할 경우, 예산권한 및 지출은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리스 구입과 자본 리스에 관하여 시장성 있는 국채(marketable debt instruments)에 대한 리스기간(the lease period)과 유사한 기간 동안의 국채 이율에 따라 계산된 부가이자비용(imputed interest costs)과 정부가 소유자로서 지급한 인식가능한 연간 운용 비용(dentifiable annual operating expenses)(예를 들어, 사용, 유지, 보험)을 제외하고, 예산 당국은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life of the contract) 정부의 총 추계된 법적 의무(the government's total estimated legal obligations)의 추계된 순 현재 가치(the estimated net present value)의 범위(amount)내에서 유용하도록 예산권한이 처음 만들어진 해의 입법에 의하여 추계한다.

재산세(Property taxes)는 운용비용(operating cost)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이자비용은 법정의무사항(mandatory)으로 분류되고, 입법에 대응하여 추계하지 않으며, 다른 목적을 고려한 현재 수준에 따라(for current level but will count for other purposes) 추계한다.



운용리스(operating leases)에 관하여 정부의 법적의무를 감당(cover)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necessary to cover the government's legal obligations) 유용하도록 처음 만들어진 해의 입법에 대하여 추계한다. 추계되는 금액에는 리스계약의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expected to arise under the full term of a lease contract) 추계된 총 지급액이 포함된다. 또는 계약의 내용에 조항을 포함된 경우, 계약의 효력이 있는 첫 회기년도의 리스 기간 동안의 리스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에 계약의 취소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추가되어 포함될 것이다.

현재의 권한에 따라 이미 보험금이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연간 리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권한만이 추계된다.

연방 정부가 실질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리스 구입 관련 지출은 - 예를 들어, 제3자의 재정지출에 대한 명시적인 정부의 보증 - 계약당사자가 건설을 하거나(constructs), 제품 생산을 하거나(manufactures), 자산을 구입하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분산추계(spread across the period)된다.

민간 분야의 실질적 위험을 보유한 운용리스, 자본리스 또는 리스 구입에 대한 지출은 리스 기간에 걸쳐 분산하여 추계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입법에 대응하는 기간 동안 기록된 지출의 총액(the total amount of outlays scored over time against legislation)은 이러한 입법에 대응하여 추계된 예산권한(the amount of budget authority scored against that legislation)의 총액과 동일할 것이다.

자산의 구입을 추계하는데 적용하는 특별한 규칙(No special rules apply to)은 존재하지 않는다(자산이 종료(is exiting) 또는 제조되거나 건축되는 것에 상관없이). 자산 권한은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의 추계된 법적의무의 범위 내에서 유용하도록 처음 만들어진 해에 추계된다.

추계된 지출은 특정 구매 협약에 따른 정부의 추계된 지출(estimated disbursements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particular purchase arrangement)과 동등해 질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입법에 대응하여 기록된 예산권한의 총액(equal the amount of budget authority scored against that legislation)과 동일할 것이다.

기존의 계약은 다시 기록되지 않는다. 리스 구입과 자본리스를 운용리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의 범위가 운용리스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자산의 소유권은 리스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존속하게 되고,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정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리스는 구입 옵션에 따른 협상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리스 기간은 자산의 추산된 경제적인 사용가능기간의 75%를 초과하지 않는다.





리스 기간 동안의 리스 최소비용의 현존하는 가치는 리스가 시작된 시점에서 자산의 적정 시장 가치의 90%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산은 정부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구입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계약자당사자 임을 이유로 한(for the government as lessee) 특별한 조건(unique specification)을 만들지 않는다.

위험은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성격이 얼마나 공공적이냐(governmental)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프로젝트가 그 성격이 그다지 공공적이지 않다면, 민간 부분의 위험은 더욱 높게 고려될 것이다.

리스 구입과 관련한 민간부분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법과 리스구입계약은 다음의 확연한 기준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공공적이지 않은지를 고려될 것이다.

정부 재정지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no provision of government financing), 제3자 재정지출에 대한 명시적인 정부 보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은 정부가 손실을 야기하는 과실을 범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자산은 정부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구입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계약자당사자 임을 이유로 한(for the government as lessee) 특별한 조건(unique specification)을 만들지 않는다.

자산의 민간시장이 존재한다.

프로젝트는 정부의 토지에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반적자법을 면제(waive)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구(Language), 또는 기록된 의무사항들의 시기와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구(Language)는 정부의 의무사항을 변경하거나 의무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권한이나 지출의 추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산권한이 의무이행(지출원인행위)에 앞서 정부 세출법안에 예산권한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에 권한을 부여하는 문구에 어떠한 의무사항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입법은 재정소요점검관리자에 의하여 추산된 범위까지 의무 권한(지출원인행위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 미지불 수표, 상각 등의 경우에는 재정지출로 추계됨

#### 12. 미지불 수표(uncashed checks), 회수되지 않는 푸드 스탬프, 기타 유사한 경우에서 상각(Write-offs)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미지불 수표(uncashed checks), 회수되지 않는 푸드 스탬프, 기타 유사한 경우(예를 들어, 수년 동안 발생한 또는 수년간 문서에 기재된 누적잔액)에서 상각(Write-offs)은 상환(offset)보다는 적자에 대한 재정지출의 방식으로 조정되어 추계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경로처리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정의 추산액은 상각이 발생한 해의 지출에 반한 순이익(netted against outlays)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각은 지출이 원래 추계되었던 계정에 추계되어야 한다.

- 협의 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협정이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분류하여 추계되지 않음

#### 13. 협의 후 재분류(Reclassification after an agreement)

예산 협의에서 추정되는 범위 까지를 제외하고, 지출과 세입의 분류를 변경시키는 효과를 지닌 법(예를 들어 재량을 법정으로, 특수 기금(special fund)을 리볼빙 기금(revolving fund)으로 세입을 상쇄수입(offsetting receipt)으로)은 예산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분류하여 추계되지 않는다.

- 부가행정 또는 프로그램 운용비용의 수용액 증가 등은 직접지출의 감소로 추계하지 않음

#### 14. 추가 행정(additional administration) 또는 프로그램 운용 비용(program management expenses)에 대한 수령액 증가(receipt increases) 또는 직접 지출 감소(direct spending reductions)의 기록

어떠한 수령액의 증가 또는 직접지출의 감소도 행정 또는 프로그램 운영 활동에 따른 직접 지출 비용을 규정하는 법규정에 따라 추계되지 않는다.





## ● 자산 판매의 추계방법

### 15. 자산 판매

자산 판매 정부의 순재정 비용이 0 또는 그 이하(흑자)라면, 기록되는 액수는 추산된 수령액의 변경액과 비용 기반 각 회기년도이 법정지출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비용이 양수인 경우(적자인 경우), 판매 수익금은 CBA 또는 GRH의 목적에 따라 추계되지 않는다.

자산 판매에 따른 연방정부의 순재정비용은 다음으로부터의 현금흐름(cash flows)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로 본다.

- (1) 자산 판매 결과 추산된 수익금(estimated proceeds from the asset sale)
- (2) 입법에 의하여 특별히 부과된 과세특례(special tax treatments)에 근거한(존재한다면), 연방의 세입에 대한 순 효과
- (3) 지속적으로 정부가 소유하였다면 발생하였을 미래 상쇄이익을 상실(the loss of future offsetting receipts)(보호기간 동안 기본적인 수준을 반영(using baseline levels for the projection)하고 그 이후 추계된 수준을 반영한(estimated levels thereafter))
- (4) 장래 지출 즉 재량지출과 법정의무지출 모두가 정부가 계속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의 수준에서 변경(보호기간 동안 기본적인 수준을 반영(using baseline levels for the projection)하고 그 이후 자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추계된 수준을 반영한)

순이익 가치를 추산하는데 사용되는 대출금리(discount rate)는 추산된 자산이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러한 기간동안 시장성 있는 재무부 증권의 평균 이자 비율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유하였을 경우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여 여기에 2% 포인트를 더한 것이 된다.

## ● 기한없는 채무권한과 미불채무에 관해서는 지출원인행위의 추산액변경의 경우에만 추계함

### 16. 기한 없는 용자를 받는 권한(Indefinite borrowing authority) 및 미불 채무에 대한 제한(limits on outstanding debt)

입법이, 차용 권한의 형식으로 행해지는(in the form of borrowing authority) 기한 없는 예산권한에 의하여 재정지원되는 항목의 미불 채무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한을 부과하거나 또는 현존하는 제한을 변경하는 것이 발생할 의무(지출원인행위)의 추산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그 범위까지 예산권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 무상장학금 규칙(Pell Scoring Rule)에 관하여는 특칙이 정해져 있음

### 17. 무상장학금규칙(Pell Scoring Rule)

무상장학금규칙 : 재정소요점검 관리 규정에 추가하여, S.Con.Res.18 (109th Congress)에서 나온 다음의 규칙은 상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제406조 개념 및 정의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정

(b) 무상장학금(PELL GRANT)

- (1) 예산권한 - 상원에서, 연방 무상장학금 프로그램에 따라 수립된 새로운 재량적인 예산 권한에 대한 세출이 전년도에 발생한 과잉분이나 부족분의 누적금액으로 조정된 다음 해의 무상장학금의 전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무상장학금 프로그램을 위한 법안에 대응하는 예산권한은 조정된 전체 비용에 동일해져야 한다.
- (2) 적용 - 이 하부규정은 2006-2007년과 다음 해를 위하여 입법을 통해 승인된 새로운 무상장학금 보조금(award)에 적용되고, 2005-2006년 동안 누적된 부족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추산 - 무상장학금의 전체 비용과 관련된 예산권한의 추정액은 최대 보조금과 적절한 요구사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기초하여야 하고, 현재의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가정을 활용하고, 재정소요점검 관리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





## 04 시사점

- 재정소요점검은 다음의 역할을 한다.<sup>9)</sup>
  - 첫째, 재정소요점검은 예산결의안에서 규정한 재량지출상한선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 둘째, 재정소요점검을 통해서 예산결의안을 위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상이의제기를 통하여 이를 통제함
  - 셋째, 재정소요점검을 통해서 예산결의안과 차이가 있는 지출을 조정할 조정법안을 위해서 대통령과 하원의장 등은 정치적인 협상을 하게 됨
  - 넷째, 재정소요점검을 위반한 지출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 일괄삭감(sequestration)을 하게 됨
- 미국 재정소요점검의 시사점
  - 재정소요점검은 재량지출의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
  - 의회 스스로 예산총액과 위원회별 할당액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자율적이며 자기교정적인 관리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재정준칙을 통하여 강제조정의 결과를 얻기보다는 정치적 협상과 합의의 계기로 삼고 있음
  - 재정소요점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률안에 대한 그리고 통과한 법률에 대한 비용추계제도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함
  - 5년과 10년 이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측과 전망 및 재정소요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됨

9)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방안 연구, 37~39면.



# 04 / 세입세출균형준칙

## 01 / 의의

- 세입세출균형준칙은 세금(tax), 수수료(fee), 또는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s) 또는 직접지출(direct spending)을 변경하는 새로운 법률의 입법은 예상된 적자를 증가시키거나 흑자를 감소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 PAYGO준칙<sup>10)</sup>, 수입지출균형원칙<sup>11)</sup>, 증감상쇄조항<sup>12)</sup>, 세출세입 연계 적자 중립화 장치, 세입세출균형준칙, 수입지출균형준칙 등 다양한 명칭
  - 최근의 국회나 언론에서는 PAYGO준칙 또는 페이고준칙으로 영어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로 세출을 통제한다는 측면과 세출에 비교되는 용어가 세입이라는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세입세출균형준칙 또는 법률번역문에서는 법문 그대로 PAYGO로 명칭함
- 세입세출균형준칙의 의의는 새로운 세입과 직접지출(direct spending)을 규정한 입법에 대해서 예산중립성원칙(a rule of budget neutrality)을 집행하는 법적 절차를 재규정하기 위한 것임
  - 예산중립성의 원칙이란 정부는 예상된 적자(projected deficits)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법률도 입법해서는 안된다는 것<sup>13)</sup>

10) 김도승 · 이상경 · 장철준, 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1) 알렌쉬크, 현성수 · 국경복 · 김승기 · 정문종 · 이양성의 번역, 미국연방예산론, 한울아카데미, 2005, 199면.

12) 이렌 S. 루빈, 신무섭 번역, 미국 예산정치론, 대영문화사, 2001, 115면.

13) [http://www.whitehouse.gov/omb/paygo\\_description/](http://www.whitehouse.gov/omb/paygo_description/) 중 rule of budget neutrality에 관한 설명 참조.



### 세입세출균형준칙(PAY-AS-YOU-GO)에 관한 법 2010

[공공법률 111-139; 제정일 : 2010년 2월 12일 ; 124 Stat. 8]

공채에 대한 법정 규제 확대에 관한 공동의결

미 상·하원의 의결

US Code 제3101조 (b)의 세부내용은 재정 제한(dollar limitation)에 저축(striking out)됨에 따라 수정되고, 따라서 \$14,294,000,000,000이 대신 추가된다.

### 제1장 세입세출균형준칙(PAY-AS-YOU-GO)에 관한 법 2010

제1조 [2 U.S.C. 931 note] 소제목

이 장은 “세입세출균형준칙(PAY-AS-YOU-GO)에 관한 법 2010”이라고 한다.

제2조 [2 U.S.C. 931] 목적

이 장은 신규 세입과 직접지출항목에 관한 입법에서 예산 중립성 원칙(a rule of budget neutrality)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세입세출균형준칙의 법적 근거

- 현재의 세입세출균형준칙의 규정한 법의 명칭은 Pay-As-You-Go Act of 2010<sup>14)</sup>
- 1990년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에서 세입세출균형준칙을 한시조항으로 규정한 후, 1993년과 1997년에 연장하여 2002년까지 운영하다가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함
- 2010년 12월 2월에 공법전(Public Law) 제111조에서 제139조까지로 삼입
- 법률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의 규칙 및 예산결의안의 내용으로 규정됨
- 의회의 규칙으로서 기능할 때에는 준칙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재정소요점 검과 같이 의사절차상 이의제기절차로 통제함

14) SEC. 1. [2 U.S.C. 931 note]



### 미국의 주요 재정관리법률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GRH Act)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Reaffirmation Act of 1987(GRH II Act)
- 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BEA)
-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1993(OBRA)
- Balanced Budget Act of 1997(BBA)

- 세입세출균형준칙은 현행법에는 적용되지 않음
  - 현행법률에 근거한 집행의 증가나 세입의 감소에는 적용되지 않음
- 세입세출균형준칙을 위반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 그 법률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님
  - 재량지출 사업 중에서 선택된 지출을 정지시키거나, 자동전면적인 삭감 (automatic across-the-board cuts)시키는 강제조정(sequester) 등 강력한 기능으로 균형을 유지함
  - 재량지출 사업 중에서 자동전면적인 삭감 내지 증감상쇄조치를 두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임
  - 실제로 직접지출의 인상이나 수입의 감쇄조치를 승인한 경우는 없음
  - 강제조정을 하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함

### 강제조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재정관련 법률

- 1993년의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 1996년의 The Omnibus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1997
- 1997년의 The Balanced Budget Act
- 1999년의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2000
- 2000년의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2001
- 2002년의 The Defense Appropriations Act for FY2002
- 2002년의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GRH Act)





## 02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2010년의 세입세출균형준칙법은 1985년의 GRH Act/BBEDCA 및 1974년 의회예산및지출통제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위의 법들에 적용을 받음

###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 (1) “BBEDCA”는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을 의미한다.
- (2) 의회 예산 및 지출 통제법 1974(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의 제3조 및 BBEDCA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정의는 이 장에서도 역시 적용된다. 다만,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특별히 수정된다.
  - (A) “후속연도(outyear)”는 회계연도(budget year) 이후 1년 또는 그 이상의 회계연도(fiscal year)를 의미한다.
  - (B) 250(c)(8)(C)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량지원프로그램(food stamp program)에 관한 내용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도 적용된다.
- (3) “AMT”는 내세입법 1986(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제55조 내지 제59조에 따른 26 U.S.C. 55-59, 개인에 대한 선택적 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 for individuals)을 의미하고, “EGTRRA”는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 2001(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Public Law 107-16))을 의미하며, “JGTRRA”는 취업성장과 감세조정법 2003(Jobs and Growth Tax Relief and Reconciliation Act of 2003(Public Law 108-27))을 의미한다.
- (4) (A) “예산효과(budgetary effects)”는 PAYGO 입법이 직접지출과 세입에서 나온 지출(outlays)에 미친 효과로, 기본수준(baseline)에 대비하여 변화한 양을 의미한다. 이는 제4조의 규정한 추계방법(ESTIMATES)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직접지출과 세입감소에 따라 지출을 증가시키는 예산효과는 ‘비용(cost)’이라 하고,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직접지출을 통하여 지출을 감소시키는 예산효과는 ‘수익(savings)’이라고 한다. 예산효과에는 국채(debt service)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B) 이러한 정의조항의 목적은, 비예산기금(off-budget)으로 인한 효과를 예산효과에서 제외시키기 위함이다. 오로지 PAYGO 스코어보드에 수치를 입력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금 관련법(appropriation Acts)의 규정들은, 이러한 규정들이 실체법을 수정(modifications to substantive laws)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목적에 따라 예산효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연도, 회계연도, 이후 4년도 기간 동안 순이익이 0인(net to zero) 지출효과(outlay effects)에 대한 예외 조항은 예산효과로 보지 않는다.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하여, “실체법의 수정안(modifications to substantive laws)”은 재정지원 관련법(entitlement law)을 개정 또는 제한하거나, 또는 정부지출금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강행 지출 사항을 개정 또는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속년도 실체법의 수정안도 아니고, 세입 변경사항도 아닌 정부지출금 관련법의 규정들은 이 장의 규정 목적에 따르면 예산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5) “재정인출(debit)”은 순총액(net total amount)을 의미하며, 이 수가 양수일 경우(when positive), PAYGO 스코어보드에 표기된 지출(cost)이 스코어보드에 기록된 당해 연도 순이익을 초과한 것을 의미한다.
- (6) “재정지원 관련법(entitlement law)”은 재정지원 권한(entitlement authority)을 부여하는 법 조항을 의미한다.
- (7) “PAYGO 입법” 또는 “PAYGO법”은 직접지출이나 기본수준 대비 세입(revenue relative to the baseline)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양원합의사항(joint resolution)을 의미한다. 세입 변경에 대한 예산효과와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출금 관련법을 포함한 후속년도 조정안은 “PAYGO 입법(PAYGO legislation)” 또는 “PAYGO 법(PAYGO Act)”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8) “시기 변경(timing shift)”은 날짜를 연기하지 않으면 9번째 후속연도부터 10번째 후속연도까지 직접지출로 인한 지출(outlays)이 발생하게 될 경우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는 날짜를 연기하지 않으면 10번째 후속연도부터 9번째 후속연도까지 발생한 세입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날짜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비용추계 방법과 기준

- CBO는 세입세출균형이 이루어지는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표(score card)를 적성함
- 세입세출균형준칙은 5년단위와 10년단위로 비용을 추계함
- 즉, 점검표는 5년 동안(또는 10년 동안)의 입법평균으로 산출한 비용(costs)이나 절감(savings)을 보여줌
- 그리고 OMB는 강제조정(sequestration)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에서 시작된 모든 평균화된 비용과 절감을 덧붙여서 비교함
- 세입세출균형의 예외를 인정할 긴급 입법(EMERGENCY LEGISLATION)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제4조 [2 U.S.C. 933] PAYGO 추계(ESTIMATES) 그리고 PAYGO 점검표**

(a) PAYGO 추계

(1) PAYGO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구됨

(A)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 예산위원회의 의장이 결정한 의결사항에 부합하도록 PAYGO 법의 예산효과를 수립하기 위하여, 하원에서 기초하였거나 수정한 PAYGO 법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 법의 예산효과는 세입세출균형준칙(PAY-AS-YOU-GO)에 관한 법 2010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대한 “PAYGO 입법의 예산효과(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라고 제명된 가장 최신 문헌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통과를 위한 표결에 앞서서 이 문헌이 제출된 경우에는, 하원 예산위원회의 의장에 의하여 국회 기록물로 발간되어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B) 상원(SENATE) -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이 결정한 의결사항에 부합하도록 PAYGO 법의 예산효과를 수립하기 위하여, 상원에서 기초하였거나 수정한 PAYGO 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 법의 예산효과는, 세입세출균형준칙(PAY-AS-YOU-GO)에 관한 법 2010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대한 “PAYGO 입법의 예산효과(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라고 제명된 가장 최신 문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통과를 위한 표결에 앞서 이 문헌이 제출된 경우에는, 상원 예산위원회의 의장에 의하여 국회 기록물로 발간되어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C) 컨퍼런스 보고서 및 양원간의 수정안 - PAYGO 법 관련 컨퍼런스 보고서의 예산 효과를 수립하기 위하여, 또는 양원의 예산위원회 의장이 공동으로 추계한 경우 PAYGO 법에 대한 양원간의 수정안의 수정을 위하여, 컨퍼런스 보고서나 양원간의 수정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의 예산효과는, 수입지출균형(PAY-AS-YOU-GO)에 관한 법 2010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대한 “PAYGO 입법의 예산효과(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라고 제명된 가장 최신 문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컨퍼런스 보고서 또는 양원간의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절차에서 통과를 위한 표결에 앞서 이 문헌이 제출된 경우, 상원 예산위원회의 의장에 의하여 국회 기록물로 발간되어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2) PAYGO 법의 예산효과 결정

(A) 최초 입법(ORIGINAL LEGISLATION)

(i) 규정내용 및 추계 - 상원 또는 하원에 의해서 기초되었거나 수정된 PAYGO 법의 통과를 위한 표결 전에, 상원 또는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법의 예산 효과의 추계를 포함한 “PAYGO 입법의 예산효과(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라고 제명된 국회 기록물을 가능하다면 법안의 통과를 위한 표결 전에 인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제7조에 따라 현 정책 조정 사항 (identification of any current policy adjustments)을 제출하여야 한다. (1)(A) 또는 (1)(B)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출금 규정(appropriate designation)에 부합하도록 이와 같은 문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은 PAYGO 법의 목적에 따라 이 법의 예산효과를 수립하도록 할 것이다.

(ii) 효과 - 통과 전에 하원 또는 상원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제출된 가장 최신 문서는 국회 기록물로 제출된 이전의 모든 문서를 대체하고, PAYGO 법이 양원 어디서든 더 이상 수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iii) 추계결과 미제출(FAILURE TO SUBMIT ESTIMATE) - 만약

(I) (i)규정에서 요구되는 추계결과가 하원 또는 상원의 통과에 앞서 제출되지 못한 경우,

(II) 이와 같은 추계결과가 제출되었으나 추후 수정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III) 이 규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 유효한 규정(valid designation)이 추후에 (1)(C)에 따른 PAYGO 법에 그리고 (B)에 따른 문서에 포함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PAYGO 법의 예산효과는 (d) (3)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B) 컨퍼런스 보고서와 양원간의 수정안

(i) 개요 - 양원 중 어느 곳이든 PAYGO 법에 대한 컨퍼런스 위원회의 보고서의 채택에 앞서, 또는 PAYGO 법에 대한 양원간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disposition)에 앞서, 하원과 상원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해당 법의 예산 효과의 추계결과를 포함한 “PAYGO 입법의 예산효과(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라고 제명된 국회 기록물을 가능하다면 법안의 통과를 위한 표결 전에 인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법의 제7조에 따라 현 정책 조정 사항(identification of any current policy adjustments)이 제출하여야 한다. (1)(C)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출금 규정에 부합하도록 이와 같은 문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은 PAYGO 법의 목적에 따라 이 법의 예산효과를 수립하도록 할 것이다.

(ii) 추계결과 미제출(FAILURE TO SUBMIT ESTIMATE) - 만약 하원이나 상원에 의한 컨퍼런스 위원회 보고서의 채택에 앞서 이러한 추계결과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PAYGO 법의 예산 효과는 (d)(3)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상원에서의 절차 - 상원에서는,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에 의한 “PAYGO 입법의 예산 효과(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라고 제명된 국회 기록물로 인쇄된 문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입법 공무원은 이 문서를 낭독하여야 한다.

(4) 예산위원회의 관할권(JURISDICTION) - 의회 예산 법 1974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제306조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1)(A), (1)(B) 또는 (1)(C)에 따른 규정 사항은 예산에 관한 상원 또는 하원 위원회의 관할 범위 내의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b) CBO PAYGO 추계 —

(1) 개설

(A) 추계 - 국회 예산법 1974(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308(a)은 그 말미에 다음의 새로운 단락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다.

“(3) CBO PAYGO 추계

“(A) 하원과 상원의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가능하다면, 국회 예산국장(Director of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게 PAYGO 입법의 예산효과 추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B) 추계는 국회 예산국에서 제공한 균형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 1985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에 의거하여 작성한 추계 기본안을 활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C) 국장은 PAYGO 법안의 예산효과를 추계하는데 있어서 시기변경(timing shift)을 수입지출균형에 관한 법 2010(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3(8)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B) 표제(SIDEHEADING) - 국회 예산법 1974(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308(a)의 표제는 눈에 띄는 관련보고서들(striking ““Reports on””)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2) 가이드라인 - 국회 예산법 1974(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제308조는 말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되었다.

“(d) 스코어관리 지침 - 이 조에 따른 추계는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252(d)(5)에 따라 마련된 스코어관리 지침에 따라 제공된다.

(c) 특정 법안에 대한 현정책 조정

(1) 개설 - 제7조 (c), (d), (e) 또는 (f)의 규정에 부합하는 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 하원과 상원의 예산위원회 위원은 CBO가 이 장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2)에 따른 입법의 예산효과의 추계결과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각각의 입법은 이전의 규정에서 정한 관련 하부 조항들 중 하나 이상에서 규정하는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CBO는 (a)에서 규정하고, (b)에 따라 산정된 입법 추계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OMB는 (d)(3)에 따라 산정된 입법 추계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조정

(A) 추계 - CBO는 예산효과의 추계결과로부터 제7조(c), (d), (e) 또는 (f)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예산효과를 다음의 범위까지 배제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예산효과가 제7조의 동일한 하부조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입법에서 규정하였던 이전의 다른 조항들의 모든 다른 배제된 예산효과와 결합하였을 때, 10년 기간 동안 적용가능한 제7조 하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현 정책 조정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배제하여야 한다.

(B) 기본수준 - (A)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모든 추계는 BBEDCA 제257조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국회 예산국에서 제공한 추계기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현 정책에 따라 조정된 CBO 입법 추계는 입법에 대한 예산효과 산정에서 제외된 비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자료(a separate presentation of costs)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7조 (c), (d), 또는 (e)의 규정, 제7조(7)의 (1), 하부규정으로 (A) 내지 (L)까지 조항들의 업데이트된 총 제외 비용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초과 수입의 사용 제한(LIMITATION ON AVAILABILITY OF EXCESS SAVINGS) -





(A) 부적절한 정책을 위한 초과수익 사용 금지 - 이 하부조항에 따라 추계된 규정의 현 정책의 조정이 그러한 규정의 추계된 예산 효과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이러한 초과수익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 정책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규정의 비용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수 없고, (d)(4)와 (d)(5)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PAYGO 스코어보드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4) 예산효과 추계에 관한 추가 지침 - 이 하부규정에 따른 예산효과의 추계는 7(h)에서 규정한 지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5) 규정의 산입 - 제7조에 따라 조정된 PAYGO 입법을 위하여, 국회의장(the Chairman of the House) 또는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을 위해 제출된 현 정책의 규정사항과 조정내용(the current policy designation and adjustments)을 설명하는 “PAYGO 입법 예산효과(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로 제명된 문헌을 포함시켜야 한다.

(d) OBD PAYGO 스코어보드

(1) 개설 - OBD는 의회예산법 1974(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제308조에 따라 정해진, 이전의 (e)의 요건과 (f) 규정 평균 요건을 적용하는 PAYGO 입법의 예산효과를 나타내주는 두 개의 PAYGO 스코어보드를 포함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문서와 긴급한 요구사항(emergency requirements)에 관한 법(statute)에서 정하는 규정의 비용추계(the estimates of the costs of provisions)를 나타내주는 부록을 유지·관리하고,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입법 추계(ESTIMATES IN LEGISLATION) - (3)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PAYGO 스코어보드에 산정결과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OMB는 (a)에 따라 규정한 적용 가능한 입법의 내용에 포함된 예산효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3) OMB PAYGO 비용추계 - PAYGO 법이 (a)에 부합하는 예산효과와 관련된 유효한 문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OMB는 입법이 제정됨에 따른 예산효과의 비용을 추계하여야 한다. OMB의 추계는 의회예산법 1974(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제308조에 정한 스코어기록 방식에 기초하며, USC 31장 1105(a)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예산안에서 사용한 동일한 경제적 기술적 가정(same economic and technical assumptions)을 사용하여야 한다.

(4) 5년간의 점검표 - 첫 번째 점검표는 당해 예산 년도를 기점으로 5년간 매 연도별 PAYGO 입법에 따른 예산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5) 10년간의 점검표 - 두 번째 점검표는 당해 예산 년도를 기점으로 10년간 매 연도별 PAYGO 입법에 따른 예산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 (6) 커뮤니티 생활 원조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법(COMMUNITY LIVING ASSISTANCE SERVICES AND SUPPORTS ACT) - OMB가 이 하부조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스코어 카드에는, 이와 같은 입법이 이 장의 제정일 이후에 법률로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연방의 장기 보장 보험 프로그램(Federal insurance program for long-term care)을 수립하도록 하는 “커뮤니티 생활 원조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법(COMMUNITY LIVING ASSISTANCE SERVICES AND SUPPORTS ACT)”이라고 제명된 입법 규정으로부터의 순수익(net savings)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 (e) 현재 연도 효과의 포착을 위한 회고(LOOK-BACK) -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OMB는 마치 회계연도(budget year)에 발생한 것 같지만 사실상 현재 연도에 발생한 의회 회기 중 제정된 PAYGO 입법의 예산효과를 처리하여야(treat) 한다.
- (f) 회계감사에 사용되는 5년간 그리고 10년간 평균산정(AVERAGING USED TO MEASURE COMPLIANCE OVER 5-YEAR AND 10-YEAR PERIODS) - OMB는 회기연도 동안 PAYGO 법의 예산효과를 산정하여야 한다(여기에는 (e)에 따른 회고효과(lookback effects)가 포함된다) 그리고
- (1) (d)(4)에서 규정하는 5년 동안의 스코어 카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후 4년은 누적된 값을 5년으로 나누고, 그 몫(quotient)을 회계연도 열(column) 및 이후 5년간의 PAYGO 점검표 열(subsequent column)에 입력(enter)한다.
  - (2) (d)(5)d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 동안의 점검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후 9년은 누적된 값을 10으로 나누고, 그 몫(quotient)을 회계연도 열(column) 및 이후 10년간의 PAYGO 점검표 열(column)에 입력(enter)한다.
- (g) 긴급 입법(EMERGENCY LEGISLATION)
- (1) 법의 규정(DSIGNATION IN STATUTE)
  - (2) 하원의 규정 - 이 장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PAYGO 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장은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야 한다(put the question of consideration with respect thereto).
  - (3) 상원의 진행규칙(POINT OF ORDER IN THE SENATE)
    - (A) 개설 - PAYGO 법이 상원의 심사 과정 중에 진행규칙(point of order)이 긴급상황 조치 규정(emergency designation in that measure)에 반하여 상원에서 수립될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고,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B) 절대다수에 의한 포기 및 항의(SUPERMAJORITY WAIVER AND APPEALS)





- (i) 포기(waiver) - (A)는 적법하게 선출되고 맹세한 상원 의원의 3/5의 찬성에 의하여 포기되거나 유예될 수 있다.
  - (ii) 항의 - 이 하부조항의 규정과 관련한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상원에서의 항의절차는 1시간으로 제한되며, 사안별로 법안이나 공동 결의사항의 관리자(manager)와 항의자에게 공평하게 분할되고 통제된다. 적법하게 선출되고 맹세한 의원 3/5의 찬성은 진행규칙(point of order)에 대한 위원회의 항의(이 하부조항에 따라 제기된)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 (C) 긴급상황 규정의 정의(DEFINITION OF AN EMERGENCY DESIGNATION) - (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하부조항에 의거한 긴급상황 요건(emergency requirement)으로서의 아이템을 규정한다면, 이러한 조항은 긴급상황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D) 절차규칙(point of order)의 형식 - (A)에 다른 절차규칙은 의회예산법 1974(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제313조(e)의 규정에 따라 상원이 제안할 수 있다.
  - (E) 컨퍼런스 보고서 - 상원에서 컨퍼런스 보고서를 검토 중인 경우, 또는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양원간의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경우, PAYGO 법과 인정된 절차규칙(point of order being sustained), 컨퍼런스 보고서에 포함된 이와 같은 자료(such material contained in such conference report)는 공격 받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shall be deemed stricken). 그리고 상원은 상원이 수정을 멈추고 하원의 수정안에 동의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원의 수정안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정안은 컨퍼런스 보고서의 일부로 구성되었거나 하원의 수정안으로 구성되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공격받지 않을 수 있다.
- (4) 점수표기에 관한 규정의 효과 - 어떤 조항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긴급상황의 요건에 해당하여 규정한 경우, CBO 또는 OMB는 PAYGO 입법의 예산효과를 추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조항의 예산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 대통령 소속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서 세입세출균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은 강제조정명령을 함
  - 세입세출균형준칙의 준수수단은 강제조정이며 대통령에게 강제조정명령 권한을 부여함
  - 실제로는 2002년까지 관리예산처장의 예산절감액(savings balances)의 삭제와 세입세출균형준칙의 점검표상의 비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을 규정한 특별법으로 강제삭제를 회피함<sup>15)</sup>

**제5조 [2 U.S.C. 934]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및 강제조정명령(SEQUESTRATION ORDER)**

- (a) 연차보고서 - 의회 회기 종료에 따른 휴회 후 14일(주말과 휴일은 산정하지 않음)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OMB는 연방공보에 PAYGO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공중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PAYGO 점검표(score card), 4(c)에 의거하여 작성된 현 정책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 4(g)에서 규정에서 정하는 긴급상황 입법에 대한 정보, (b)에서 규정하는 강제조정(sequestration) 관련 자료, 이 장과 이 규정에 의거한 소송에서 대중의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타 자료나 설명들을 포함한 업데이트 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b) 강제조정명령(SEQUESTRATION ORDER) - (a)에 의거하여 국회 회기 말에 발행된 연차보고서가 회기년도에 대한 PAYGO 점검표에 재정인출이 나타날 경우, 제6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그러한 재정인출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직접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현액(budgetary resources)을 삭감시키는 강제조정명령을 포함한 보고서를 OMB가 마련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명령하여야 한다. 점검표 양변에 재정인출이 존재하는 경우, 이 두 재정인출을 완전히 상쇄시킬 수 있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OMB는 하원과 상원에 이러한 명령과 보고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강제조정명령을 발령한 경우, 각 예산의 삭감을 위하여, 강제조정명령에 따른 예산 현액의 기본 수준의 추산액(estimate of the baseline level of budgetary resources)과 예산 현액 삭감 액(the amount of budgetary resources to be sequestered), 강제조정명령으로 인하여 회기년도 및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지출의 삭감 내용을 연차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5) 김도승 외, 앞의 보고서, 75면.





- 강제조정액의 산정

- 각 정부지출 프로그램에서 “통일된 삭감 비율(uniform reduction percentage)”에 따라 강제조정액이 산정됨
- 특정프로그램만 과다하게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일된 삭감비율을 법률에 규정함

**제6조 [2 U.S.C. 935] 삭감액 산정(CALCULATING A SEQUESTRATION)**

(a) 면제 없이 통일된 비율로 예산현액 축소(REDUCING NONEXEMPT BUDGETARY RESOURCES BY A UNIFORM PERCENTAGE)

- (1) 개설 - OMB는 면제 없이 직접지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현액(budgetary resources)을 삭감시키는 통일된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b)에 의거한 산정결과에 따라 삭감됨으로써 발생한 이와 같은 지출 수익(outlay savings)은 PAYGO 점검표의 회기년도 재정인출을(존재한다면) 상환한다. 통일된 비율이 앞 조항에 따라 산정되었다면, 256(d)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료보험프로그램(Medicare programs)은 4퍼센트까지 감축되고, 다른 면제 없는 직접 지출 프로그램의 예산 현액(budgetary resources)을 삭감시키는 통일된 비율은 필요한 경우 증가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의료보호프로그램과 기타 모든 면제 없는 직접지출 프로그램은 요구되는 지출 수익(outlay savings)을 함께 창출할 것이다.
  - (2) 오로지 통일된 예산의 프로그램 및 활동(PROGRAMS AND ACTIVITIES IN UNIFIED BUDGET ONLY) - 제11조에서 설정한 예외조항에 따라 OMB는 오로지 통일된 예산에 포함된 프로그램 및 활동들을 고려하여 (1)에서 요구하는 통일된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 (b) 지출 수익(OUTLAY SAVINGS) - 회기년도 재정인출을 상환시키기 위한 삭감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OMB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BBEDCA 256(j) 규정에 따른 곡물수확연도의 곡물지원금(a crop year of crop support payments)의 삭감액이 회기년도 및 그 다음 회기년도의 지출금을 감축시킨다.
  - (2) 삭감 명령이 내려진 후 12개월의 기간 동안 BBEDCA 256(d)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인의료보험금을 삭감한 금액이 회기년도 및 다음 회기년도의 지출금을 감축시킨다.
  - (3) 기타 면제 없는 법정 프로그램들의 예산 현액(budgetary resources)에 대한 회기년도의 삭감액이 회기년도 및 다음 회기년도의 지출금을 감축시킨다.



- 현재의 정책을 위한 조정절차

- 현재의 사회보장법제와 내국세법 그리고 최저세(AMT)와 각종 감세정책 등에 관해서는 정책적 목표와 효과를 감안한 조정방안을 법률에 규정

### 제7조 [2 U.S.C. 936] 현재 정책을 위한 조정

(a) 목적 - 이 조의 목적은, 입법이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4개 분야에 대하여 PAYGO 입법이 미친 예산효과와 추계결과를 조정하는 것을 규정하는데 있다.

- (1) 사회보장법 1848조에 의거한 지불(이 조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Payment for Physicians' Services)에 관한 조항이다);
- (2) 내국세법 1986(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의 B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 (3) 최저세(이하에서는 AMT)
- (4) 내국세법 1986을 수정한 경제성장및조세감면법(이하에서는 EGTRRA) 또는 고용성장 및조세감면법(이하에서는 JGTRRA)의 규정(또는 EGTRRA 또는 JGTRRA의 수정법을 다시 수정한 이후 법률의 관련 규정), 기타-
  - (A) 연금보호법 2006(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에 의거하여 기한이 없어진 (made permanent) 상기 두 개 법률의 관련 규정(Public Law 109 --280);
  - (B)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수정
  - (C) (3)에서 규정하고 있는 AMT
  - (D)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통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200,000 달러 이상의 1인 세대주 또는 250,000 이상의 공동 세대주로 조정된다(adjusted gross incomes greater than \$200,000 for a single filer and \$250,000 for joint filers).

(b) 기간 - 이 조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c) 의사에게 지불하는 노인의료보험 비용

- (1) 기준 - 사회보장법 제1848조 (d)와 (f)의 규정에 따른 지불갱신 시스템(system for updating payments)을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규정을 포함한 입법은 이 장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현재 정책의 수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 (2) 조정 - 현 정책 조정의 상한액은 다음 사항 간의 차액이 되어야 한다.
  - (A) 지출 비율(payment rate)에 기인하는 추계된 순지출과 사회보장법(2009년 12월 31일 발효하도록 계획된) 제1848조 (d)와 (f)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한도 : 그리고
  - (B) 다음의 경우에 이러한 순지출 결과





- (i) 명목상 지급 비율과 2009년에 발효한 관련 기준이 변경 없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경우
  - (ii) 따라서 명목상 지급 비율(the nominal payment rates)과 (A)에서 규정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i)에서 규정하는 가정(assumption)이 결코 적용되지 않을 경우
- (3) 제한사항(LIMITATION) - (1)의 기준에 부합시키는 입법상의 규정들이 (2)규정에 의거한 조정 상한(maximum adjustment)의 범위 안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경우, 이 조항에 의거하여 마련된 각각의 현 정책 조정액(amount of each current policy adjustment)은 다음 사항들 간의 차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A) 지출 비율(payment rate)에 기인하는 추계된 순지출과 사회보장법(2009년 12월 31일에 발효하여, 유효한 입법(eligible legislation)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해당 조항에서 특정한 관련 기준 그리고
  - (B) 명목상 지급 비율과 2009년에 발효한 관련 기준이 변경 없이 (A) 규정에 따른 유효한 입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동일한 기간 동안 유효한 경우, 이러한 순지출 결과
- (d) 상속 및 증여세
- (1) 기준 - 내국세법 1986(Internal Revenue Code of 1986)B에 의거하여 상속 및 증여세를 수정하는 조항을 포함한 입법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현재 정책의 수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 (2) 조정 - 현재 정책 조정의 상한액은 다음 사항간의 차액이 되어야 한다.
    - (A) 내국세법 1986(2009년 12월 31일 발효하도록 계획된)에 의거하여 징수하도록 설계된 총 세입: 그리고
    - (B) (1)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의 제정일에,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estate and gift tax law)이 대신 수정되어, 세율(tax rates), 명목상 면제액(nominal exemption amounts), 납세연도에 효력이 있는 관련 기준들(related parameters)이 (g)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2009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한 명목상 면제 금액(nominal exemption amounts indexed for inflation)과 함께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이러한 세입징수의 결과
  - (3) 제한사항(LIMITATION) - (1)에 부합하도록 하는 입법상의 규정들이 (2)에 의거한 조정 상한(maximum adjustment)의 범위 안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경우, 이 조항에 의거하여 마련된 각각의 현 정책 조정액(amount of each current





policy adjustment)은 다음 사항들 간의 차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A) 내국세법 1986(2009년 12월 31일 발효하여 유효한 입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효력이 있도록 계획된)에 의거하여 징수되도록 설계된 총 세입 ; 그리고
- (B)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estate and gift tax law), 명목상 면제액(nominal exemption amounts), 2009년에 효력이 있는 관련 기준들(related parameters)이 (g)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2009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된 명목상 면제 금액(nominal exemption amounts indexed for inflation)과 함께 (A)에 의거하여 효력이 있는 입법의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는 동일한 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세입의 결과

- (4) 정책조정 기간 - 이 하부규정에 따라 수행된 조정은 오로지 2011년 12월 31일까지 상속 및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적용될 수 있다. 조정안에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있었던 연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한 예산 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e) AMT 감면(RELIEF)

- (1) 기준 - AMT 감면을 연장시키는 규정을 포함한 입법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현재 정책 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 (2) 조정 - 현재 정책 조정 상한액은 다음 사항간의 차액이어야 한다.

(A) 내국세법 1986(2009년 12월 31일 발효하도록 계획된)에 의거하여 징수하도록 설계된 총 세입: 그리고

(B) (1)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의 제정일에, 공동 또는 개인 세대주에 대한 면제액을 균형 있게 조정(이러한 조정은 AMT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의 수 또는 AMT 결과 발생하는 세금공제혜택을 상실한(lost credits) 납세자의 수가 2008년 납세연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있었던 어떠한 연도에도, 영향을 받은 납세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데)함에 따라 AMT 법(AMT law)이 대신 수정되는 경우 총 세입 징수 결과

- (3) 제한사항(LIMITATION) - (1)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입법상의 규정들이 (2)규정에 의거한 조정 상한(maximum adjustment)의 범위 안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경우, 이 조항에 의거하여 마련된 각각의 현 정책 조정액(amount of each current policy adjustment)은 다음 사항들 간의 차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A) 내국세법 1986(2009년 12월 31일 발효하여 유효한 입법의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효력이 있도록 계획된)에 의거하여 징수하도록 설계된 총 세입: 그리고

(B) (1)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의 제정일에, 공동 또는 개인 세대주에 대한 면제액을 균형 있게 조정(이러한 조정은 AMT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의 수 또





는 AMT 결과 발생하는 세금공제혜택을 상실한(lost credits) 납세자의 수가 2008년부터 (A)에 의거하여 유효한 입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동일한 기간 동안 납세연도에 영향을 받은 납세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함에 따라 AMT 법(AMT law)이 대신 수정되는 경우 총 세입 징수 결과

- (4) 정책 수정 기간 - 이 하부조항에 따라 행해진 조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AMT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적용이 가능하다. 조정안에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있었던 연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한 예산 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f) 중산층에 대한 감세 정책의 영구적인 연장(PERMANENT EXTENSION OF MIDDLE-CLASS TAX CUTS)
- (1) 기준 - 중산층의 감세를 연장하는 규정을 포함한 입법은, 이러한 규정이 다음 규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확장되는 경우, 현재 정책의 수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 (A) EGTRRA의 101(a)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2010년 납세연도에 유효한 10퍼센트 계층
- (B) EGTRRA의 제201조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2010년 납세연도에 유효한 18세 미만 자녀 세금 공제(The child tax credit)
- (C) EGTRRA의 제3장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2010년 납세연도에 유효한 혼인한 부부에 대한 세제 보조금
- (D) EGTRRA의 제202조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2010년 납세연도에 유효한 입양에 따른 세금공제(The adoption credit)
- (E) EGTRRA의 제204조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2010년 납세연도에 유효한 부양가족 부양에 따른 세금공제(The dependent care credit)
- (F) EGTRRA의 제205조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2010년 납세연도에 유효한 직장인 자녀를 돌봄으로 인한 세금 공제
- (G) EGTRRA의 제4장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2010년 납세연도에 유효한 교육 세제 보조금(The education tax benefits)
- (H) EGTRRA의 101(a)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2010년 납세연도에 유효한 25-28퍼센트 계층
- (I) 2010년 납세연도에 이후 (g) 부합하도록 각 해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조정된 소득수준(income levels indexed for inflation)과 함께 2010년 납세연도에 소득세율은 200,000 달러 이상의 1인 세대주 또는 250,000 이상의 공동 세대주로 조정되도록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adjusted gross income of \$200,000 or less for



single filers and \$250,000 or less for joint filers in tax year 2010) EGTRRA의 101(a)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2010 납세연도에 유효한 33퍼센트 계층

(J) 2010년 납세연도에 이후 (g)에 부합하도록 각 해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조정된 소득수준(income levels indexed for inflation)과 함께 소득세율은 200,000 달러 이상의 1인 세대주 또는 250,000 이상의 공동 세대주로 조정되도록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adjusted gross income of \$200,000 or less for single filers and \$250,000 or less for joint filers in tax year 2010) JGTRRA 제301조와 302조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자산소득(capital gains)과 적법한 배당금(qualified dividends)으로부터 나온 수입에 대한 세율(rates)

(K) 2010년 납세연도에 이후 (g) 부합하도록 각 해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조정된 소득수준(income levels indexed for inflation)과 함께 소득세율은 200,000 달러 이상의 1인 세대주 또는 250,000 이상의 공동 세대주로 조정되도록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adjusted gross income of \$200,000 or less for single filers and \$250,000 or less for joint filers in tax year 2010) EGTRRA의 제102조와 제103조에서 각각 규정한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개인적인 면세의 단계적 폐지(phaseout of personal exemptions) 및 항목별 공제액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overall limitation on itemized deductions)

(L) JGTRRA 제202조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후의 수정안에서 규정한 2010 납세연도에 유효한 내국세법 1986(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179(b)에 따라 소상공인의 감가 상각되는 사업 자산에 대한 비용지출(expensing)에 대한 제한 증대

(2) 조정 - 현재 정책 조정의 상한액은 다음 사항간의 차액이 되어야 한다.

(A) 내국세법 1986(2009년 12월 31일 발효하도록 계획된)에 의거하여 징수하도록 설계된 총 세입: 그리고

(B) (1)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의 제정일에 (1)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들의 기한이 없어진 경우(permanent), 이러한 세입징수의 결과와 지출 지불금의 결과

(3) 제한사항(LIMITATION) - (1)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입법상의 규정들이 (2)규정에 의거한 조정 상한(maximum adjustment)의 범위 안에서 기한이 정해진 경우(not permanent), 이 조항에 의거하여 마련된 각각의 현 정책 조정액(amount of each current policy adjustment)은 다음 사항들 간의 차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A) 내국세법 1986(2009년 12월 31일에 발효하여, 유효한 입법(eligible legislation)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간 동안 효력이 있도록 계획된)에 의거하여 징수하도록 설계된 총 세입과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금(outlays to be paid)
- (B) (1)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의 제정일에 (1)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들이, (A)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효한 입법(eligible legislation)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간 동안, 변경 없이 효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세입징수 결과와 지출 지불금 결과
- (g)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지수와의 연동(INDEXING FOR INFLATION) –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된 금액(Indexed amounts)은, 이 조항의 (B) 규정에 따라 “역년 1992”는 “역년 2008년”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여 납세 연도가 시작된 역년(calendar year) 동안, 내국세법 1986 1(f)(3)에 의거하여 결정된 생계비 조정결과(cost-of-living adjustment)와 그 금액이 동일해 질 수 있도록 증가되어야 한다.
- (h) 추계 및 현재 정책 조정에 관한 지침(GUIDANCE ON ESTIMATES AND CURRENT POLICY ADJUSTMENTS)
- (1) 중산층에 대한 감세 – (f)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추계비용의 목적을 위하여 각각의 소득세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 발효할 것으로 계획된 현행법에 AMT가 존재하는 것처럼 추계되어야 한다.
- (B) 소득세 관련 1개 이상의 규정이 입법에 포함된 경우, 이러한 규정들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추계되어야 한다.
- (2) AMT – (2)의 규정에 따라 추계하기 위하여, AMT의 변경은 (e)(1)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입법의 제정일에, (f)(1)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세 관련 규정들이 마치 기한이 없는 것과 같이 추계되어야 한다.

- 1985년의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 통제법(BBEDCA)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
  - 세입세출균형지출준칙은 1985년 BBEDCA에서 적자목표(이후에는 재량지출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고 직접지출과 세입입법에 관한 균형지출을 규정한 것으로 시작됨
  - 2010년 세입세출균형지출법에 BBEDCA가 일부 수정되어 적용



### 제8조 [2 U.S.C. 937] BBEDCA의 적용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 (1) BBEDCA 제205조에도 불구하고, BBEDCA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 및 제274조는 이 장에 따라 수정되어, 이 장의 규정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 (2) 제255조, 제256조, 제274조의 “이 절(this part)” 또는 “이 장(this title)”에 관한 내용은 이 장을 적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3) BBEDCA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 및 제274조가 제254조에 관한 내용은 이 장의 제5조를 참고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4) BBEDCA 256(b)의 제252조 또는 제253조에 관한 내용은 이 장의 제5조를 참고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5) BBEDCA 256(d)(1)의 제252조 또는 제253조에 관한 내용은 이 장의 제6조를 참고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6) BBEDCA 256(d)(4)의 제252조 또는 제253조에 관한 내용은 이 장의 제5조를 참고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7) BBEDCA 256(k)는 이 장의 삭감(sequestration)에 적용되어야 한다.
- (8) BBEDCA 257(e)의 제251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에 관한 내용은 이 장의 제4조를 참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 기술적인 수정과 수정에 따른 경과조치

- 세입세출균형의 위반시 강제조정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삭감면제의 정부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강제조정에서 면제되는 일련의 정부프로그램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특징
- 특히 면제 프로그램 중 많은 수가 사회보장법제라는 점에서 복지지출을 특별히 고려하고 있음

### 제9조 기술적인 수정

- (a) BBEDCA 250(c)(18)은 연방예금보험기관(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gencies)의 비용을 결산(striking)하고, 연방예금보험기관(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gencies)의 비용을 삽입(inserting)함으로써 수정된다.
- (b) BBEDCA 256(k)(1)은 (5)에 규정한 사항을 결산하고, (6) 규정한 사항을 삽입함으로써 수정된다.





## 제10조 수정에 따른 경과조치(CONFORMING AMENDMENTS)

- (a) BBEDCA 256(a)는 삭제된다.
- (b) BBEDCA 256(b)는 438(c)(2)에 따른 용자개시 수수료(origination fees)의 계산에 의하여 수정되고, 동 법의 455(c)는 0.50 퍼센트 포인트까지 각각 증가되어야 한다. 438(c)(2)와 (6) 그리고 455(c)에 의거한 용자개시 수수료(origination fees)와 동 법의 428(f)(1)(A)(ii)에 의거한 용자 절차비용 및 발행비용(loan processing and issuance fees)을 이에 대신하여 삽입하는 것은 삭감명령에서 정한 통일된 비율까지 각각 증대되어야 하고, 삭감 기간 중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동 법 438(b)에 따라 삭감 기간 중에 축적된 특별보조지급액(special allowance payments)이 삭감명령에서 정한 통일된 비율까지 감축되어야 한다.
- (c) BBEDCA 256(c)는 폐지된다.
- (e) BBEDCA 256(d)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1) (2), (3) 그리고 (4)를 (3), (5) 그리고 (6)으로 규정한다 :
- (2) (1)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지출금의 감축 산정 - (2)의 규정에 따른 제252조 또는 제253조에서 요구하는 총 감축 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 제7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OMB는 사회보장법 제XVIII장에 의거한 건강보험프로그램에 적용할 감축비율을 결정하여야 하고, 제254조에 따른 대통령령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A) 이와 같은 장의 A 절(part)과 B 절(part)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명령이 발령된 날 이후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이 이후라면, (4)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의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지급액에 대하여; (B) C부분과 (D)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동일한 1년의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부분에 의거한 계약에 대한 월 지급액에 대하여; 이러한 명령에 따른 지불금을 통하여 형성된 삭감액은 같은 기간 동안 이러한 지급액에 대하여 요구되는 총 감축비율을 달성하여야 한다.
- (3) (1) 뒤에 다음을 삽입함으로써:
- “(2) 통일된 감소 비율 : 허용가능한 최대 감축(UNIFORM REDUCTION RATE; MAXIMUM PERMISSIBLE REDUCTION) - 삭감명령에 따라서 제XVIII장의 규정에 의거한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에 대한 지급 감축은 통일된 비율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비율은 이와 같은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이러한 전체 프로그램과 활동들의 4%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3) 다음에, 다음과 같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삽입한다.
- “(4) 추후의 삭감명령 발령시기(TIMING OF SUBSEQUENT SEQUESTRATION ORDER) - 제XVIII장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252조 또는 253조의 규정에서 요구



하는 삭감명령은, (1)에 부합하도록 결정된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삭감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유효했던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첫 달의 첫 날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6)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 산정된 지불액을 고려하지 않은 삭감(SEQUESTRATION DISREGARDED IN COMPUTING PAYMENT AMOUNTS)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XVIII장에 따른 급 조정액의 계산을 위하여 이 절(part), 이 절(part)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어 왔거나 효력이 있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 지급 감축액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A) 1853(c)(6)의 규정에 의거한 Part C 성장비용

“(B) 1860D-2(b)(6)에 의거한 Part D 연간 성장률

“(C) 31860D-15(e)에 의거한 Part D 지급비용에 대한 위기회랑(risk corridors)의 적용 (6) (6)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규정한 내용을 추가한다.

“(7) 삭감으로부터의 면제 - 제255조 규정에서 특정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들에 덧붙여 다음은 이 장에 의거한 삭감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A) PART D 저소득층 보조금 -사회보장법 1860D-14에 의거한 보험료 및 비용분담 보조금(Premium and cost-sharing subsidies)

“(B) PART D 재난보조금 - 사회보장법 1860D-15(b) and (e)(2)(B)에 의거하여 지급

“(C) 보험료 보조금 수령자격이 있는 자(QUALIFIED INDIVIDUAL (QI) PREMIUMS) - 사회보장법 1933조에 의거하여 일정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호 혜택을 통한 의료보호 비용 분담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주에 지급

제11조 면제대상인 프로그램과 활동

(a) 규정 - BBEDCA 제255조는 (i)를 (j)로 규정하고, “1998”을 대신하여 “2010”을 삽입한다.

(b) 사회보장제도, 재향군인 프로그램(VETERANS PROGRAMS), 순이익 그리고 세금, 세금 공제혜택 - BBEDCA 제255조 (a)부터 (d)까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a) 사회보장 보조금 및 TIER I 철도공무원 은퇴 후 보조금 - 사회보장법(42 U.S.C. 401 et seq.)에 따라 수립된 노인, 유족(survivors), 그리고 장애인 보험 프로그램과 U.S.C 제45장 231b(a), 231b(f)(2), 231c(a), 그리고 231c(f)에 따른 지불 가능한 혜택은 이 part에 따라 발령된 명령에 의거하여 감축되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

“(b) 재향군인 프로그램 -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은 이 part에 의거하여 발행된 명령에 따른 감축으로부터 면제된다: 세계 제2차대전 참전용사에 대한 특별 혜택(28-0401-0-1-701).

“(c) 순이익 - (카테고리 900의 모든 주요 기능) 순이익에 대한 지급 감축은 이 part에 의거하여 발령된 명령에 의거하여 행해져서는 안 된다.





“(d) 환불가능 소득세 공제(REFUNDABLE INCOME TAX CREDITS) - 내국세법 1987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개인에 대한 지불금(Payments to individuals)은 이 part에 의거하여 발령된 명령에 따른 감축 대상에서 면제된다.

(c) 기타 프로그램과 활동, 저소득 프로그램(LOW-INCOME PROGRAMS, AND ECONOMIC RECOVERY PROGRAMS)과 경제 회복 프로그램(ECONOMIC RECOVERY PROGRAMS) - BBEDAC 제255조 (g) 그리고 (h)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g) 기타 프로그램 및 활동

“(1)(A) 다음의 예산항목(budget accounts)과 활동은 이 part에 의거하여 발령된 명령에 따른 감축으로부터 면제된다.

- 면제프로그램 생략 -

- 결정 및 진행규칙에 관해서 1974년 국회예산법상의 규정들을 존중해야 하며, 기타 모호한 내용에 관해서는 CBO와 상하원의 예산위원회의 위원장간의 협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

**제12조 [U.S.C. 938] 결정 및 진행규칙(DETERMINATIONS AND POINTS OF ORDER)**

이 장의 어느 부분도 1974년 국회예산법 제312조에 따른 국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CBO와 국회의 상하원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장의 모호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법을 개정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고 있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칫 세입세출균형준칙이 복지관련 법제의 재정지출만을 낮추고 입법의 탄력성을 저해할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예외규정을 둠





### 제13조 [U.S.C. 939] 사회보장법의 개정 제한(LIMITATION ON CHANGES TO THE SOCIAL SECURITY ACT)

이 법의 다른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기 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for Responsible Fiscal Action) 또는 사회보장법 제2장에 따라 수립된 노인,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 보험 프로그램이나 chapter 9의 A에 따라 징수된 세금과 관련한 권고안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는 신속한 절차에 따른 법안이나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고려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chapter 1의 E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내국세법 chapter 1 B part II 제86조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

(b) 포기(waiver) - 이 조는 적법하게 선출되고 맹세한 상원 의원의 3/5의 찬성에 의하여 포기되거나 유예될 수 있다.

(c) 항의 - 적법하게 선출되고 맹세한 의원 3/5의 찬성은 의사진행규칙(point of order)에 대한 위원회의 항의(이 하부조항에 따라 제기된)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 03 시사점

- 의회 스스로 재정건전성을 목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함
- 세입세출균형준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삭감을 한다는 점에서 의회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장치로 볼 수 있음
- 특별법에 의해서 세입세출균형준칙의 강제조정제도를 실제로 운용하지 않았던 경험에 비추어 다양한 내용의 정부프로그램과 법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05 / 결론

- 재정소요점검제도 중 일부는 현재 비용추계분석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제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예외규정이 적고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와 집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실하게 입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기준선전망과 함께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할 경우, 전체 예산 총액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관리제도로서의 실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도입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측정하고 관리할 전문기구의 역할이 도입의 전제조건이 됨
- 세입세출균형준칙은 법안제출시 필요한 자원확보라는 측면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제도로 국내도입이 필요하지만, 의원의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아래의 한계점을 지님
  - 첫째, 새로운 입법에 관한 통제장치로서 기존의 지출에 대한 감소효과는 적음
  - 둘째, 사회보장법제 등에 대한 제한은 자칫 복지국가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셋째, 강제할 방법이 없음 미국에서도 강제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듯이 실제로 세입세출균형준칙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강제할 적절한 수단을 찾기 힘들



- 세입세출균형준칙의 국내 도입은 그 전제로서 기준선전망이나 재정소요점검 제도의 도입과 함께 미국과 비교하여 제도자체의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함
  - 첫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둘째, 세입세출균형준칙의 강제조정조항을 적용하기 보다는 의사절차상의 이의제기가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적 측면과 함께 정치적으로 의회의 합의와 관행이 선행되어야 함



## 06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방안 연구, 예산정책보고서 제10호, 국회예산정책처, 2010
- 김도승 · 이상경 · 장철준, 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알렌쉬크, 현성수 · 국경복 · 김승기 · 정문종 · 이양성의 번역, 미국연방예산론, 한울아카데미, 2005, 199면.
- 이렌 S. 루빈, 신무섭 번역, 미국 예산정치론, 대영문화사, 2001
- 정문종,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제15호, 국회예산정책처, 2007. 6
- The Federal Budget Process, TheCapito.Net, 2012
- COMPILATION OF LAWS AND RULES RELATING TO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 AS AMENDED THROUGH AUGUST 3, 2012 –, COMMITTEE ON THE BUDGET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12

법제분석지원 IssuePaper 14-21-⑩

**미국의 재정소요점검과  
세입세출균형준칙에 관한 법제분석**

---

**발행일** 2014년 12월 20일

**발행인** 이 원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